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이필레 의원)

의안 번호	20-25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4. .

발의자 : 이필레, 조영덕, 이홍민, 강명숙,  
김기석, 김성희, 권영숙, 김진천

## 1. 제안이유

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가용 이용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규정 신설(안 제2조 별표 1)

## 3. 관계법령

가.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

## 4. 조 례 안 : 붙임

## 5. 예산조치 : 없음

## 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20. 4. 13. ~ 4. 17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5.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3시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- 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
- 나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 1]  <u>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관련)</u>                   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. ~ 24.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[별표 1]  <u>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관련)</u>                     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(현행과 같음)  <u>25.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                      금의 전부 또는 3시간 범위에서                     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 <u>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                      생한 경우</u>                      나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주차장법

[시행 2020. 3. 24.] [법률 제17091호, 2020. 3. 24., 타법개정]

-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**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"노상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1. 6. 8., 2016. 1. 19.>
-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(이하 "주차요금등"이라 한다)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**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**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"노외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6. 1. 19.>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6. 1. 19.>